

제 1996-104호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및지척(동대문)	15
제 1996- 67호	도시계획시설(철도)변경결정및지적승인(중앙)	15
제 1996-109호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설치계획인가(성북)	16
제 1996- 65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노원)	16
제 1996- 53호	도시계획사업(도로)실시계획인가(은평)	17
제 1996- 54호	도시계획사업(도로)실시계획인가(은평)	18
제 1996- 55호	도시계획사업(도로)실시계획변경인가(은평)	19
제 1996-101호	도시계획사업(도로)실시계획변경인가(서대문)	19
제 1996- 87호	도시계획사업(도로)실시계획변경인가(구로)	20
제 1996- 88호	도시계획시설(구로리공원)조성계획결정지적승인(구로)	26
제 1996- 51호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동작)	27
제 1996- 66호	하천점용허가(강남)	27
제 1996-292호	하천점용허가(송파)	28
● 구 공 고		
제 1996-242호	도시계획안공람(동작)	28
제 1996-275호	도시계획안공람(관악)	29
제 1996-367호	전문건설업양도인가(서초)	30
제 1996-338호	전문건설업양도인가(강남)	31
● 사업소고시		
제 1996-116호	하천점용허가(한강관리사업소)	31
제 1996-117호	하천점용허가기간연장허가(한강관리사업소)	32
● 사업소공고		
제 1996- 10호	도시공원시설(매점)관리위탁(공원녹지관리사업소)	32
● 인 사 발 령		33
● 기 타		
정정개재		38

규 칙

서울특별시직제규칙중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1996. 12. 26

서울특별시장 조 순 ㉞

●서울특별시규칙제2794호

서울특별시직제규칙중개정규칙

서울특별시직제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5항제3호 중 “도로진급복구대책의 총괄·조정 및 도로굴착복구에 관한 사항”을 “도로진급복구대책 및 제설대책의 총괄·조정과 도로굴착복구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별표)사무분장표의 도로국 도로관리과 도로관리제의 사무분장 중 제7호를 제8호로 하며,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7. 제설대책의 총괄·조정
- 에 관한 사항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1. 개정이유

제설대책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건설안전관리본부 도로관리부에서 관장하고 있는 제설대책업무 중 총괄·조정

2. 주요골자

도로국 도로관리과 분장사무에 제설대책의 총괄·조정

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제19조제5항 및 별표)

※ 제설대책 총괄 : 건설안전관리본부 도로관리부 → 도로국 도로관리과

서울특별시지하철건설본부직제규칙중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1996. 12. 26

서울특별시장 조 순 ㉞

●서울특별시규칙제2795호

서울특별시지하철건설본부직제규칙중

개정규칙

서울특별시지하철건설본부직제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기술차장은 지방시설부이사관”을 “기술차장은 지방시설부이사관 또는 지방공업부이사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지방토목사무관 5인”을 “지방행정사무관 1인과 지방토목사무관 4인”으로 하고 동조 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토지의 취득·수용·보상업무 및 관련재산의 총괄

제12조 내지 제17조를 제9조 내지 제14조로 하고, 제9조 내지 제11조를 삭제하며,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건설1부·건설2부·건설3부·건설4부)

① 건설1부·건설2부·건설3부 및 건설4부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토목사무관 21인을 둔다.

② 건설1부·건설2부·건설3부 및 건설4부는 다음 사항을 분장하되 공사구역 및 부별 지방토목사무관의 수는 본부장이 정한다.

- 1. 토목, 궤도공사의 계획 및 시공감독
- 2. 소관공사의 물동 계획 및 자재수급관리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1. 개정이유

제2기 지하철건설공사의 마무리단계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설비분야의 종합조정·관리기능을 강화하고 수용토지에 대한 재산관리 및 건설부서의 기능보강·조정 등 지하철건설본부의 직제를 일부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제2기 지하철공사 마무리단계에서 전차·전기·신호통신 등 설비시스템 분야의 종합적인 조정·관리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하철건설본부 기술차장의 직렬에 공업직렬을 추가함(제2조).

※ 기술차장 직렬: 지방시설부이사관 → 지방시설부이사관 또는 지방공업부이사관

나. 지하철건설 수용토지에 대한 재산정리·관리기능을 보강하기 위하여 공정관리부에 지방행정사무관 1인을 두고 그 분장업무를 규정함(제6조).

※ 지방토목사무관 1명과 상계조정

다. 건설1부·건설2부·건설3부 및 건설4부로 구분되어 있는 지방토목사무관의 수를 건설공정에 따라 본부장 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정원을 통합규정함(제8조).

※ 건설1부 6인, 건설2부 5인, 건설3부 5인, 건설4부 5인 → 건설1·2·3·4부 21인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규칙중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1996. 12. 26

서울특별시장 조 순 인

●서울특별시규칙제2796호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규칙중 개정규칙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18〉 지하철건설본부정원표의 3급란 정원내용 중 “시설부이사관 1”을 “시설부이사관 또는 공업부이사관 1”로 하고, 동표 5급란 정원내용 중 행정직 “4”를 “5”로, 토목직 “35”를 “34”로, 6급란 정원 “203”을 “204”로, 정원내용 중 전산직 “1”을 “2”로 하며, 7급란 정원 “185”를 “184”로, 정원내용 중 토목직 “96”을 “93”으로, “건축직 18” 다음에 “지적직 1”을 삽입하고, 전산직 “1”을 “2”로 하며, 8급란 정원 내용 중 토목직 “33”을 “32”로, 전산직 “1”을 “2”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1. 개정이유

제2기 지하철건설공사의 마무리단계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하철건설본부의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지하철건설공사 마무리단계의 전차·전기·신호통신 등 설비 분야의 종합적인 조정·관리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하철건설본부 기술차장의 직렬에 공업직렬을 추가하고,

나. 지하철건설 수용토지에 대한 재산정리·관리 및 제3기 지하철건설 사전준비를 위한 전산화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련 정원을 상계조정함(별표 3-18).

※ 토목직 5명(5급 1, 7급 3, 8급 1)

→행정5급 1, 전산6급 1, 전산7급 1, 지적7급 1, 전산8급 1

서울특별시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설치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1996. 12. 26

서울특별시장 조 순 ㉑

●서울특별시규칙제2797호

서울특별시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설치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

서울특별시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설치조례시행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청소사업본부 청소국장”을 “하수국 하수국장”으로, “청소사업본부 청소국 총무부장”을 “하수국 하수행정과장”으로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기금운용 상황보고) 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출납폐쇄 후 3월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2조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서울특별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1. 개정이유

현재 우리시 소속 환경미화원은 한강관리사업소 및 4개 하수처리사업소에서 근무하고 있는바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관리부서를 현행 “환경관리실”에서 “하수국”으로 변경하고자 관련 규정을 일부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기금출납명령관을 당초 “청소사업

본부 청소국장”에서 “하수국 하수국장”으로 변경하고 기금출납공무원은 당초 “청소사업본부 청소국 총무부장”에서 “하수국 하수행정과장”으로 변경함(제3조).

나. 기금의 수입에 관한 사항은 분기별로, 기금의 지출에 관한 사항은 월별로 각각 감사원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던 규정을,

— 매 회계연도마다 출납폐쇄 후 3월 이내에 기금의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고

—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시의회에 제출하는 것으로 변경(제8조)

고 시

●서울특별시고시제 1996-339호

도시계획사업(도로)실시계획변경인가정정

1. 서울특별시고시 제1996-315호(96. 11. 25)로 도시계획사업(도로) 실시계획 변경인가 시행 중인 “기차촌~북한산길간 도로개설공사”의 변경인가 내용 중 물권면적이 착오기재되어 도시계획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 변경인가 내용 중 일부를 정정하였기 같은 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은평구청 건설관리과 및 토목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996. 12. 26

서울특별시장

가.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건물의 소재지, 지번·지목 및 권리의 명세서(정정분)						
구 분	지 번	지 목	토지면적 면적(m ²)	소 유 자		비 고
				성 명	주 소	
기정(서울특별시 시고시 제1996- 315)	은평구 진관외 동 91-1.	전	9	윤경운	서울시 은평구 진관 외동 78	면적오류 정정
변 경	은평구 진관외 동 91-1	전	23	윤경운	서울시 은평구 진관 외동 78	
<p>※나머지 사항은 변경 없음.</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align-items: flex-start;">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width: 150px;"> <p style="font-size: 24px; margin: 0;">공 고</p> </div> <div style="width: 80%;"> <p>로 차량운행제한 공고한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한기간을 변경코자 도로법 제 54조제1항, 제54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2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1996. 12. 26 서울특별시 장</p> </div> </div> <p>●서울특별시공고제1996-491호 차량운행제한 서울특별시공고 제1995-151호(95. 5. 30)</p>						
도로의 종류	특별시도		시 설 명	강변대로(신설구간)		
제한의 대상	높이 2.5m 이상 차량 및 총 중량 6톤 이상 차량		구 간	반포대교 부단~중랑천 횡단 지점		
기 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초 : 1995. 5. 27~1996. 12. 31 24 : 00까지 • 변경 : 1995. 5. 27~1997. 6. 30 24 : 00까지 					
이 유	강변대로 해당 구간 상행선(강변 1-2공구) 개통 시점 변경(96. 12. 31→97. 6. 30)에 따른 차량운행제한 기간 연장					
기 타						
<p>< 위 치 도 > 생 략</p>						

●서울특별시공고제1996-496호
제15회서울특별시건축상응모작품
모집공고

우리 시에서는 건축문화의 창달과 도시의 미관을 증진하고, 우수한 건축물의 건축을 장려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건축조례 제71조 규정에 의하여 우리 시 관내에 건축된 우수한 건축물을 선정 시상코자 다음과 같이 제15회 서울특별시 건축상 응모작품 모집을 공고하오니 많이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6. 12. 26

서울특별시장

1. 명칭 : 제15회 서울특별시 건축상
2. 상의 종류 : 금상(1점), 은상(2점), 동상(3점), 장려상(3점)
3. 시상내용
 - 가. 설계자 : 상장과 부상
 - 나. 건축주 : 상장과 상패(동판)
 - 다. 시공자 : 상장
 - * 수상자에 대한 특전 : 서울특별시건축조례 제71조제3항 규정에 의거 건축사 행정처분의 경감
4. 응모대상 : 1995. 1. 1~1996. 12. 31 사용승인(예정)된 모든 건축물(규모 및 용도 제한 없음)
5. 응모작품 접수기간 : 97. 1. 15~97. 1. 31
6. 응모작품 제출장소 : 서울특별시 건축지도과
7. 작품제출요령
 - 가. 소경양식의 응모원서(서울특별시 건축지도과 비치)
 - 나. 패널 2개(규격 90cm×90cm) 제작 제출
(건축개요, 전경사진,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주단면도 등)
 - 다. 작품(절경) 사진(5"×7") 20매

- 라. 작품설계 설명서(건축개요 포함) 1부
모형제출은 필요에 따라 제출가능
- 8. 건축상 시상 및 작품전시계획
 - 가. 시상일 : 97. 2~3월(예정)
 - 나. 작품전시 기간 : 97. 3. 5~3. 11(예정)
 - 다. 작품전시 장소 : 세종문화회관 제1전시실(예정)
- 9.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건축지도과(전화 : 731-6381~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공고제1996-498호
차량운행제한

도로법 제5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차량운행제한하고자 같은 법 제54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2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1996. 12. 26

서울특별시장

도로의 종류	특별시도	시 설 명	서강대교
제한의 대상	총중량 40톤 초과 차량	구 간	교량 본선 전구간 및 복단진·출입램프
기 간	개통시점부터 무기한		
이 유	동 교량의 구조보전 및 차량운행 위험 방지		
문 의 처	서울특별시 도로국 도로관리과(731-6766~8)		

<위치도>

생략(서울시 도로국 도로관리과 비치도면과 같음)

구 고 시

●종로구고시제 1996-64호

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지적승인

1. 서울특별시고시 제1996-284호(96. 10. 14)로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결정된

가.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결정 지적승인 조서

사항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거 지적승인 하였기 이를 고시합니다.

2. 지적승인 도서는 종로구청 도시정비과 및 시민봉사실에 각각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996. 12. 26

종로구청장

구분	등급	유별	번호	폭원	연장	기 점	종 점	비 고
기정	중로	1	190	20m	1,140m	소격동 57(대로 1-3)	가회동 산 1 (중 1-33)	베트남대사관 앞 선형조정(L=70m)
변경	중로	1	190	20m	1,140m	소격동 57(대로 1-3)	가회동 산 1 (중 1-33)	

나. 지적승인 도면 : 서울특별시 종로구청 도시정비과 및 시민봉사실 비치도면과 같음(생략).

●중구고시제 1996-60호

도시계획시설(서소문근린공원)조성계획 변경결정지적승인

1. 서울특별시고시 제1996-321호(96. 11.

29)로 도시계획시설(서소문공원) 조성계획변경 결정승인되어 도시계획법 제13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지적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중구청 공원녹지과(260-1395)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1996. 12. 26

중 구 청 장

- 가. 도시계획시설(서소문 근린공원) 조성 계획변경 결정조서: 서울특별시 중구청 공원녹지과에 비치
- 나. 도시계획시설(서소문 근린공원) 조성 계획변경 결정도면: 서울특별시 중구청 공원녹지과에 비치

● 동대문구고시제 1996-96호

도시계획시설(도로개설) 실시계획변경 인가고시

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고시 제1995-38호 (95. 5. 16)로 도시계획사업(도로개설) 실시계획인가 및 서울특별시 동대문구고시 제1995-130호(95. 7. 18)로 도시계획사업(도로개설) 변경인가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동 42-23~109-95간 도시계획시설(도로)에 대하여
2. 도시계획법 제2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과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권한위임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사업(도로개설) 실시계획 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3. 관계서류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 토목과(920-4405~8) 및 건설관리과(920-4400~4)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996. 12. 26

동 대 문 구 청 장

- 가. 사업시행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동 42-23~109-95간
- 나. 사업의 종류: 도시계획사업(도로개설)
명칭: 회기동 42-23~109-95간 도로개설공사
다. 사업의 규모: 도로개설 B=8m, L=

75m

라. 사업시행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 장

마. 사업확공 및 준공연월일

변경전: 인가일~1996. 12. 31

변경후: 인가일~1997. 12. 31

바.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및 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생략

사. 사용 또는 건물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4조제3항에 의한 관계인의 주소, 성명: 생략

● 동대문구고시제 1996-97호

도시계획사업(도로개설) 실시계획변경 인가고시

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고시 제1995-10호 (95. 2. 14)로 도시계획사업(도로개설) 실시계획인가 및 서울특별시 동대문구고시 제1996-65호(96. 9. 11)로 변경인가된 바 있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성북천변 노상주차장 건설 및 진입도로개설에 대한 도시계획시설(도로, 주차장)에 대하여
2. 도시계획법 제2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과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권한위임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사업(도로개설, 주차장) 실시계획 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3. 관계서류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 토목과(920-4405~8) 및 건설관리과(920-4400~4)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996. 12. 26

동 대 문 구 청 장

- 가. 사업시행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신설동 97-3~92-60
- 나. 사업의 종류: 도시계획사업(도로개설,

주차장

명칭 : 성북천변 노상주차장 건설 및
전입도로개설공사

다. 사업의 규모 : 폭 6m, 연장 290m

주차장면적 2,666.4㎡

라.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
장

마. 사업착공 및 준공연월일

변경전:1995. 2. 14~1997. 2. 28

변경후:1995. 2. 14~1997. 12. 31

바.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및 건물의 소
재지, 지번 지목 및 소유권 이외의 권
리명세 : 생략

사. 사용 또는 건물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4조제3항에 의한 관계인의 주소, 성
명 : 생략

●동대문구고시제 1996-98호

도시계획사업(도로개설)실시계획변경
인가고시

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고시 제1995-1호 (95. 2. 6)로 도시계획사업(도로개설) 실시계획인가 및 서울특별시 동대문구고시 제1995-65호(95. 10. 13)로 변경인가된 바 있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동 62 일대 도시계획시설(도로)에 대하여,
2. 도시계획법 제2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과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권한위임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사업(도로개설) 실시계획 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3. 관계서류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 토목과(920-4405~8) 및 건설관리과(920-4400~4)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996. 12. 26

동대문구청장

가. 사업시행지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
기동 62 일대

나.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사업(도로개
설)

명칭 : 회기동 62 일대 도로개설공사

다. 사업의 규모 : 도로개설 B=8m, 연장
95m

라.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
장

마. 사업착공 및 준공연월일

변경전:인가일~1996년 12월 31일

변경후:인가일~1997년 12월 31일

바.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및 건물의 소
재지, 지번 지목 및 소유권 이외의 권
리명세 : 생략

사. 사용 또는 건물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4조제3항에 의한 관계인의 주소, 성
명 : 생략

●동대문구고시제 1996-99호

도시계획사업(도로개설)실시계획변경
인가고시

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고시 제1995-14호 (95. 3. 2)로 도시계획사업(도로개설) 실시계획인가 및 서울특별시 동대문구고시 제1996-34호(96. 5. 25) 및 서울특별시 동대문구고시 제1996-44호(96. 6. 12)로 변경인가된 바 있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용두동 199-187간 및 118-19주변 도시계획시설(도로)에 대하여,
2. 도시계획법 제2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과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권한위임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사업(도로개설) 실시계획 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3. 관계서류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 토목과(920-4405~8) 및 건설관리과(920-

4400~4)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
입니다.

1996. 12. 26

동 대 문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용
두동 199-187간 및 118-19 주변

나. 사업의 종류: 도시계획사업(도로개
설)

명칭: 용두동 199-187간 및 118-19 주
변 도로개설공사

다. 사업의 규모: 도로개설 B=4~6m, L
=200m

라. 사업시행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

마. 사업착공 및 준공연월일

변경전: 인가일로부터 2년간

변경후: 인가일~1997년 12월 31일

바.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및 건물의 소
재지, 지번 작목 및 소유권 이외의 권
리명세: 생략

사. 사용 또는 건물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4조제3항에 의한 관계인의 주소, 성
명: 생략

●동대문구고시제 1996-100호

도시계획사업(도로개설)실시계획변경
인가고시

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고시 제1995-9호
(95. 2. 14)로 도시계획사업(도로개설)
실시계획인가 및 서울특별시 동대문구고
시 제1996-45호(96. 6. 12)로 도시계획사
업(도로개설) 변경인가 및 서울특별시 동
대문구고시 제1996-71호(96. 9. 19)로 변
경인가된 바 있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전농동 443-1~403-11간 도시계획시설
(도로)에 대하여

2. 도시계획법 제 2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26조의 규정과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권한위임규정에 의거 도시계획

사업(도로개설) 실시계획 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
조규 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3. 관계서류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 토목
과(920-4405~8) 및 건설관리과(920-
4400~4)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
입니다.

1996. 12. 26

동 대 문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전
농동 443-1~403-11간

나. 사업의 종류: 도시계획사업(도로개
설)

명칭: 전농동 443-1~403-11간 도로개
설공사

다. 사업의 규모: 도로개설 B=6m, L=
60m

라. 사업시행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

마. 사업착공 및 준공연월일

변경전: 인가일로부터 2년간

변경후: 인가일~1997년 12월 31일

바.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및 건물의 소
재지, 지번 지목 및 소유권 이외의 권
리명세: 생략

사. 사용 또는 건물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4조제3항에 의한 관계인의 주소, 성
명: 생략

●동대문구고시제 1996-101호

도시계획사업(도로개설)실시계획변경
인가고시

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고시 제1995-7호
(95. 3. 11)로 도시계획사업(도로개설)
실시계획인가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제
기동 135-137간 도시계획시설(도로)에
대하여,

2. 도시계획법 제 2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26조의 규정과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권한위임규정에 의거 도시계획 사업(도로개설) 실시계획 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 조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 3. 관계서류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 토목과(920-4405~8) 및 건설관리과(920-4400~4)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996. 12. 26

동대문구청장

가. 사업시행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제기동 137-31~137-389간

나. 사업의 종류: 도시계획사업(도로개설)

명칭: 제기동 135-137간 도로개설공사

다. 사업의 규모: 도로개설 B=8m, L=110m

라. 사업시행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

마. 사업착공 및 준공연월일

변경전: 인가일~1996년 12월 31일

변경후: 인가일~1997년 12월 31일

바.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및 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생략

사. 사용 또는 건물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4조제3항에 의한 관계인의 주소, 성명: 생략

● 동대문구고시제 1996-102호

도시계획사업(도로개설) 실시계획변경 인가고시

- 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고시 제1996-45호(96. 2. 13)로 도시계획사업(도로개설) 실시계획 인가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량리동 622~618간 도시계획시설(도로)에 대하여,
- 2. 도시계획법 제2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26조의 규정과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권한위임규정에 의거 도시계획 사업(도로개설) 실시계획 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 조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 3. 관계서류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 토목과(920-4405~8) 및 건설관리과(920-4400~4)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996. 12. 26

동대문구청장

가. 사업시행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량리동 622~618간

나. 사업의 종류: 도시계획사업(도로개설)

명칭: 청량리동 622~618간 도로개설공사

다. 사업의 규모: 도로개설 B=8m, L=80m

라. 사업시행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

마. 사업착공 및 준공연월일: 인가일로부터 2년간

바.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및 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별첨

사. 사용 또는 건물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4조제3항에 의한 관계인의 주소, 성명: 별첨

도시계획사업(도로개설) 실시계획 변경내역

(청량리동 622~618간 도로개설공사)
 <변경전>

연번	지 번	물 건	규격 및 종류	수량 (㎡)	소 유 자	
					성 명	주 소
1	청량리동 621	주택 (1층) 주택 (2층)	슬래브/벽돌	11.6	홍옥순 종로구 삼청동 35-185	
			"	11.6		
			목대문 목대문	1식 1식		
2	"	주택	슬레이트/블록	28.8	계재희 동대문구 청량리동 621	

<변경후>

연번	지 번	물 건	규격 및 종류	수량 (㎡)	소 유 자	
					성 명	주 소
1	청량리동 621	주택 (1층) 주택 (2층)	슬래브/벽돌	20.2	홍옥순 종로구 삼청동 35-185	
			"	11.6		
			목대문 목대문	1식 1식		
2	"	주택	슬레이트/블록	20.2	계재희 동대문구 청량리동 621	

● 동대문구고시제1996-103호

도시계획사업(도로개설)실시계획변경
 인가고시

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고시 제1996-26호 (96.4.20)로 도시계획사업(도로개설) 실시계획 인가 및 서울특별시 동대문구고시 제1996-43호 (96.6.12)로 변경인가된 바 있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안교-중랑교 간 도로개설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도로)에 대하여,

2. 도시계획법 제2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과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권한위임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사업(도로개설) 실시계획 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3. 관계서류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 토목과 (920-4405~8) 및 건설관리과 (920-4400~4)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p style="text-align: center;">1996. 12. 26 동대문구청장</p> <p>가. 사업시행지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휘경동 43-142-장안동 283-1</p> <p>나.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사업 (도로개 설) 명칭 : 장안교 중량교간 도로개설공 사</p> <p>다. 사업의 규모 : 도로개설 B=20m, L=1,500m</p> <p>라.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p>	<p>장</p> <p>마. 사업착공 및 준공 연월일 - 변경전 : 인가일로부터 2년 - 변경후 : 1996. 4. 20-1997. 12. 31</p> <p>바.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및 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소유권 이외 의 권리명세 : 별첨</p> <p>사. 사용 또는 건물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4조제3항에 의한 관계인의 주소, 성명 : 별첨</p>
--	---

변경인가 내역

<변경전>

연번	지 번	물 건	규격 및 종류	수량 (㎡)	소 유 자	
					성 명	주 소
1	휘경동 43-1	공장 화장실 대문 담장	슬레이트/블록 블록 철재 블록	110 1 1식 1식	이동근 휘경동 43-1	
2	"	공장 대문 담장	기와/블록 철재 블록	51 1식 1식	박주열 전남 해남 마산연구지동	

<변경후>

연번	지 번	물 건	규격 및 종류	수량 (㎡)	소 유 자	
					성 명	주 소
1	휘경동 43-1	공장 및 주택 화장실 대문 담장	슬레이트/블록 블록 철재 블록	110 1 1식 1식	이동근 휘경동 43-1	
2	"	공장 및 주택 대문 담장	기와/블록 철재 블록	51 1식 1식	박주열 성북구 돈암동 616-100 한신② 107-1403	

●동대문구고시제1996-104호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및지적고시

1. 우리 구 도시계획구역내 도시계획시설(도로)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규칙 제2717호(95. 11. 30),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 조사 내용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996. 12. 26

동대문구청장

가.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및 지적고시 조사

입안 구분	구 도				기능	면장 (m)	시 점	종 점	사용형태	비 고
	등급	유별	번호	폭원 (m)						
신설	소로	3		6	특수 도로	80	담십리 동 산 2-9	담십리동 41-1	보행자 전용도로	고가설치

나. 고시도면 : 동대문구청 도시정비과 비치도면과 같음(생략).

하였기에 같은 법 제12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중랑구고시제1996-67호

도시계획시설(철도)변경결정및지적승인

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철도)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제1항, 같은 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4호 규정에 의하여 변경결정하고 지적승인

2. 관련도서는 중랑구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996. 12. 26

중랑구청장

가. 도시계획시설(철도) 변경결정 및 지적승인 조사

구분	시 설 명	시설의 재분	위 치	규모(㎡)	비 고
기정	고속철도 (지하철7호선)	면목정거장	중랑구 면목동 일대	120 4,538	면목정거장 출입구 부분 면적 조정 (증 6㎡)
변경				4,544	

나. 관계도면 : 생략(비치장소 비치도면과 같음)

(490-3385-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자세한 사항은 중랑구청 도시정비과

●성북구고시제1996-109호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설치
계획인가

1. 서울특별시 성북구고시 제1996-89호 (96.10.8)로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결정되고 서울특별시 성북구고시 제 1996-98호(96.11.15)로 변경결정 및 지적 승인된 "중암동 66-25 외 4필지상 성북노 인종합복지관 건립"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5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2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성북구공고 제 1996-349호(96.11.27)로 공람공고하였으

며, 도시계획법 제25조,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와 제27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설치계획 인가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서류는 성북구청 가정복지과 (920-3490~2)에 비치하여 토지 및 건물 소유자와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1996. 12. 26

성 북 구 청 장

가. 사업의 종류: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설치

나. 사업시행 내역

사업의 종류	사업시행지	사업의 규모	비 고
중암동 66-25 외 4필지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설치	중암동 66-25 중암동 66-26 중암동 66-27 중암동 66-37 중암동 66-14	대지: 1,088㎡ 건물: - 연면적 3,000㎡ - 지하2, 지상3층	노인종합복지관 건립

나. 사업시행사: 서울특별시상

라.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사업인 가일 ~ 97.12.31

마. 사용할 토지 소재지: 첨부된 내용과 같음.

바.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 주소, 성명 : 첨부된 내용과 같음.

첨부: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각 1부

나.

1996. 12. 26

노 원 구 청 장

1. 사업명: 주택건설사업
2. 사업주체: 청솔연립재건축주택조합 조합장 김광식(노원구 상계동 181-2)
3. 사업시행지

가. 위치: 노원구 상계동 181-2

나. 대지면적: 9,721.90㎡

다. 사업규모: 지하 3층 지상 9-25층 아파트 3개동 358세대 및 부대부 리시설

라. 연면적: 52,686.10㎡

4. 사업시행기간: 96.12 - 98.10

5. 관계법률에 의거 의제 처리되는 사항
가. 도시계획법 제4조에 의한 형질변

●노원구고시제1996-65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고시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181-2 필지상의 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32조 규정에 의거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하고, 동법시행령 32조의5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경 및 토지분할허가, 제5조2항에 의한 토지의 출입 등의 허가

나. 도시계획법 제12조에 의한 도시계획의 결정

다. 도시계획법 제23조5항의 규정에 의한 시행자의 지정 및 동법 제25조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라.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39조에 의한 허가

마. 도로법 제34조에 의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동법 제40조에 의한 도로점용허가

바. 건축법 제8조에 의한 허가 및 동법 제15조에 의한 가설 건축물의 신고

사. 국토법 제36조에 의한 전용상수도 설치의 인가

●은평구고시제1996-53호

도시계획사업(도로)실시계획인가
 서울시고시 제3호(92.1.25)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및 지적고시된 불광동 357-14 365-4간 도시계획시설(도로)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5조, 동법시행령 제6조 및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규칙 제2657호에 의거 도시계획사업(도로)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동법 제26조 및 동법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1996. 12. 26

은 평 구 청 장

1. 사업시행지: 은평구 불광동 357-14-365-4간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류: 도시계획사업(도로)
 나. 명칭: 불광동 357-14-365-4간 도로개설공사
3. 사업 규모
 B=6m, L=35m
4. 사업 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가. 주소: 은평구 녹번동 84
 나. 성명: 은평구청장
5. 사업기간: 인가일로부터 97.12.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명세: 별첨
7.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4조제3항의 관계인 주소, 성명: 별첨
8. 기타: 관계도서는 은평구 건설국 토목과(350-1405)에 비치하며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토지 및 건물(지장물) 조서

(토 지)

연번	지번	지목	토지		소유자	
			총면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1	불광동 365-2	대	202	23	이정옥·배명수 은평구 불광동 365-2 (국민은행 중구남 대문로2가 9-1)	
2	365-3	대	202	74	이정옥·배명수 은평구 불광동 365-2	
3	365-4	대	175	18	고형학 은평구 불광동 372-1	

(천 물)					
연 번	지 번	건물(지장물)		소 유 자	
		종 류	면적 (㎡)	성 명	주 소
1	불광동 365-2	철대문 셔터 창고 담장 측백나무 향나무 주목나무 구기자나무	1식 1식 2.2 10.4×2.2 1주 1주 1주 1주	이정옥·배명수 은평구 불광동 365-2 (국민은행 중구 남대문로2가 9-1)	
2	365-3	석유보일러 (17,000kcal) 보일러실 창고 철대문 담장 수도 셔터 비가리개 포도나무 대추나무 측백나무	1식 1식 6.6 1식 22.4×0.5 1식 2식 1식 1주 1주 1주	이정옥·배명수 은평구 불광동 365-2	

●은평구고시제1996-54호

도시계획사업(도로)실시계획인가
서울시고시 제3호(69.1.18)로 도시계획
시설(도로) 결정고시되고, 서울시고시 제4
호(91.1.7)로 변경 결정고시되고, 은평구
고시 제5호(91.3.5)로 변경 지적승인된 갈
현동 271간 도로개설공사에 대한 도시계획
사업(도로)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5조,
동법시행령 제6조 및 서울특별시행정권한
위임규칙 제3조 별표 규정에 의거 도시계
획사업(도로)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동법
제26조 및 동법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

거 이를 고시합니다.

1996. 12. 26

은 평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 : 갈현동 271간 도로개설
공사

나. 위치 : 갈현동 271

다. 사업규모 : 도로개설 B=8m L=30m

라. 사업의 시행자 : 은평구청장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 예정일 : 인가
일로부터 98.2.28

바.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건물의 소
재지, 지번, 지목 및 소유권 이외의

관리명세 : 별첨

사.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4조제3항의 관계인 주소, 성명 : 별첨

아. 기타 관계도서는 은평구 건설국 토목과(350-1405)에 비치하며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은평구고시제1996-55호

도시계획사업(도로)실시계획변경인가

서울시고시 제283호(85. 4. 27)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고시되고, 서울시고시 제751호(85. 11. 4)로 지적승인되었으며, 서울시고시 제949호(88. 12. 6)로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결정 고시되고, 서울시고시 제969호(88. 12. 9)로 변경 지적승인된 진관외동 279-27~279-43간 도로개설공사에 대한 도시계획사업(도로)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5조, 동법시행령 제6조 및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규칙 제3조 별표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사업(도로) 실시계획을 변경인가하고 동법 제26조 및 동법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1996. 12. 26

은 평 구 청 장

가. 사업명 : 진관외동 279-27-279-43간 도로개설공사

나. 위치 : 진관외동 279-7-279-43

다. 사업규모 : 도로개설 B=6m, L=25m

라. 사업의 시행자 : 은평구청장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인가일로부터 98. 2. 28

바. 변경인가 사항 : 수용토지의 일부 변경사.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 별첨

아.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4조제3항의 관계인 주소, 성명 : 별첨

바. 기타 : 관계도서는 은평구 건설국 토목과(350-1405)에 비치하며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서대문구고시제1996-101호

도시계획사업(도로)실시계획변경인가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고시 제1996-15호(96. 3. 22)로 도시계획사업(도로) 실시계획 인가된 대현동 107-77~110-15간의 1개소 도시계획사업(도로)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 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대문구청 토목과와 건설관리과에 비치하여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996. 12. 26

서 대 문 구 청 장

가. 사업내용 변경전

구 분	사업시행 위치	사업종류 및 명칭	사업규모	시설결정	지적고시
변경전	옥천동 69~45간	도시계획사업(도로) · 옥천동 69~45간 도로개설공사	B=4m L=90m		
변경후	옥천동 69~45간	도시계획사업(도로) · 옥천동 69~45간 도로개설공사	B=4m L=88m	건설부고 제560호 1963. 9. 19	건설부고 제560호 1963. 9. 19

구 분	사업시행위치	사업종류 및 명칭	사업규모	시설결정	지적고시
변경전	대현동 107-77~110-15간	도시계획사업(도로) · 대현동 107-77~110-15간 도로개설공사	B=8m L=60m	-	-
변경후	대현동 107-77~110-15간	도시계획사업(도로) · 대현동107-77~110-15간 도로개설공사	B=8m L=60m	서울특별시 공고 제360호 (1964. 7. 3)	서울특별시 공고 제360호 (1964. 7. 3)

- 나. 사업기간 : 96. 3. 22 ~ 97. 12. 31 (변경없음)
 다. 수용토지·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변경없음)
 라.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변경없음)

● 구로구고시제1996-87호

도시계획사업(도로)실시계획변경인가
 1. 서울특별시고시 제2호(72. 3. 7)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및 지적승인, 구로구로시 제77호(95. 11. 10)로 인가고시 및 구로구고시 제78호(96. 11. 27)로 변경결정 및 지적승인된 구로구 고척동 산업인아파트-제방도로간 도로개설사업을 위해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된 구간의 도로개설 사업을 위해 도시계획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및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규칙 제3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사업(도로) 실시계획을 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구로구청 건설관리과 및 토목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996. 12. 26

구로구청장

1)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구로구 고척

1동 57-228-60-38

-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도시계획사업(도로), 산업인아파트-제방도로간 도로개설공사
- 3) 사업규모 : B=10m, L=230m
- 4) 사업시행자 : 구로구청장
- 5) 사업기간 : 인가일로부터 97. 12. 31
-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명세 : 별첨 조서
- 7)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4조제3항의 관계인의 주소·성명 : 별첨 조서
- 8) 관계도면 : 구로구청 토목과 비치도면과 같음.

토 지 주 서					
(변경전)					
번호	지 번	지 목	권입면적 (㎡)	소 유 자	
				성 명	주 소
1	고척동 60-43	잡	6	백광산업(주) 구로구 고척동 산 55-1 (근저당 지상권 중구 남대문2가 111-1(주)한국상업 은행(영등포지점) (근저당 중구 태평로2가 120 (주)신한은행(영등포 지점)) (근저당 종로구 공평동 1 (주)한미은행(영등포지 점)) (근저당 영등포구 여의도동 15-22 (주)한국장기신 용은행) (근저당 중구 소공동 1 한국산업리이스(주)) (근저당 부산시 동구 범일동, 825-3 (주)농남은행 (영등포지점)) (근저당 강남구 대치동 891-6 산업회화퀵탈(주)) (근저당 중구 을지로1가 101-1 (주)하나은행(서울 대 입구지점)) (근저당 영등포구 여의도동 34-8 대신증권(주))	
2	60-44	잡	7	백광산업(주) 구로구 고척동 산 55-1 (상기 이해관계인 전부 동일)	
3	57-218	공장	9	백광산업(주) 구로구 고척동 산 55-1 (상기 이해관계인 전부 동일)	
4	57-219	공장	13	백광산업(주) 구로구 고척동 산 55-1 (상기 이해관계인 전부 동일)	
5	57-220	공장	10	백광산업(주) 구로구 고척동 산 55-1 (상기 이해관계인 전부 동일)	
6	57-221	공장	782	백광산업(주) 구로구 고척동 산 55-1 (상기 이해관계인 전부 동일)	
7	60-45	답	3	정영현 용산구 한남동 747-3 (근저당 영등포구 신길동 4518 우성④ 207-1502 이 도상)	
8	60-46	대지	11	정영현 용산구 한남동 747-3	

번호	지 번	지 목	면적 (㎡)	소 유 자	
				성 명	주 소
9	고척동 60-47	대지	102	사회복지법인 평화원 구로구 고척동 60-25	
10	57-225	대지	98	사회복지법인 평화원 구로구 고척동 60-25	
11	57-223	대지	119	최상태 영등포구 신길동 1456 송병국 양천구 신정동 329 복동(1410-1401 (근저당 중구 을지로2가 50 중소기업은행(개봉동 지점, 관악지점))	
12	57-224	도로	96	손진원 성동구 옥수동 428 극동(2-107 (근저당 중구 을지로2가 9-10(주)보람은행(수유동 지점))	
13	60-26	대지	711	정영현 용산구 한남동 747-3	
	계		2,062		

물 건 조 서

(변경전)

물건 번호	소재 지번	물건의 종 류	구조 및 규격	수량	소 유 자		비고
					성 명	주 소	
1	고척동 60-25	건물	슬래브/철근콘크리트	6㎡	사회복지법인 평화원 구로구 고척동 60-25		지층
		건물	슬래브/철근콘크리트	6㎡			1층
		건물	슬래브/철근콘크리트	6㎡			2층
		건물	슬래브/철근콘크리트	6㎡			3층
		창고	슬래브/벽돌	8㎡			
		차량출입로	콘크리트	72㎡			
		정화조	폴리에스텔	3식			
		집수정	철판/벽돌	2식			

물건 번호	소재 지번	물건의 종 류	구조 및 규격	수량	소 유 자		비고
					성 명	주 소	
1	고척동 60-25	나무	넝쿨장미 (10년생) 개나리 (10년생) 사철나무 (20년생) 장미 (5년생) 연산홍 (5년생)	12주 10주 1주 5주 2주			
2	고척동 57	건물	세와/블록	56m ²	백광산업(주) 구로구 고척 동 산 55-1 (근저당·지상권 중구남대 문2가 111-1 (주)한국상업 은행(영등포지점)) (근저당 중구 태평로2가 120 (주)신한은행(영등포지 점)) (근저당 종로구 공평동 1 (주)한미은행(영등포지점)) (근저당 여의도동 15-22 (주)한국장기신용은행) (근저당 부산시 동구 범일 동 825-3 (주)동남은행(영 등포지점)) (근저당 강남구 대치동 891-6 산업유희하렌탈(주)) (근저당 중구 을지로1가 101-1 (주)하나은행(서울대 입구지점)) (근저당 여의도동 34-8 대 신증권(주))		
		건물	세와/블록	68m ²			
		창고	슬레이트/블록	3m ²			
		장독대	블록(1×5m)	1식			
		담장	블록(2×40m)	1식			
		자재창고	천막/철파이프	24m ²			
3	60-25	주택 및 공 장	슬레이트/블록 및 철판	138 m ²	최태형 양천구 신정동 산 91		
		화장실	슬레이트/목조	8m ²			
	계			305 m ²			

토 지 조 서						
(변경후)						
번호	소재지 지 번	지 목	편입면적 (㎡)	소 유 자		비 고
				성 명	주 소	
1	고척동 60-48	잡	98	백광산업(주) 구로구 고척동 산 55-1 (근저당권·지상권 중구 남대문로2가 111-1(영등포지점) (주) 한국상업은행) (근저당권 종로구 공평동 1(영등포지점) (주) 한미은행) (근저당권 중구 태평로2가 120(영등포지 점) (주) 신한은행) (근저당권 영등포구 여의도동 15-22 (주) 장기신용은행) (근저당권 중구 소공동 1 한국산업티스 (주)) (근저당권 부산 중구 범일동 825-3(영등 포지점) (주) 봉남은행) (근저당권 강남구 대치동 891-6 산업평화 렌탈(주)) (근저당권 중구 을지로1가 101-1(서울대 입구지점) (주) 하나은행) (근저당권 영등포구 여의도동 34-8 대신 증권(주))		
2	60-43	잡	6	백광산업(주) 구로구 고척동 산 55-1 (상기 이해관계인 전부 동일)		
3	60-53	잡	4	백광산업(주) 구로구 고척동 산 55-1 (상기 이해관계인 전부 동일)		
4	60-49	잡	49	백광산업(주) 구로구 고척동 산 55-1 (상기 이해관계인 전부 동일)		
5	60-44	잡	7	백광산업(주) 구로구 고척동 산 55-1 (상기 이해관계인 전부 동일)		
6	60-54	잡	13	백광산업(주) 구로구 고척동 산 55-1 (상기 이해관계인 전부 동일)		
7	60-50	담	21	구로구 구로구 구로동 435		보상제외

번호	소재지 지번	지 목	편입면적 (㎡)	소 유 자		비 고 (모지번)
				성 명	주 소	
8	60-52	대	18	구로구 구로구 구로동 435		보상제외
9	60-55	답	5	정영현 용산구 한남동 747-3 (근저당권 영등포구 신길동 4518 우성(A) 207-1502 이도상)		
10	60-45	답	3	구로구 구로구 구로동 435		보상제외
11	60-46	대	11	구로구 구로구 구로동 435		보상제외
12	고척동 60-56	대	26	정영현 용산구 한남동 747-3		
13	57-218	장	9	백광산업(주) 구로구 고척동 산 55-1 (상기 이해관계인 전부 동일)		
14	57-219	장	13	백광산업(주) 구로구 고척동 산 55-1 (상기 이해관계인 전부 동일)		
15	57-226	장	82	백광산업(주) 구로구 고척동 산 55-1 (상기 이해관계인 전부 동일)		
16	60-51	대	455	구로구 구로구 구로동 435		보상제외
17	60-57	대	91	사회복지법인 평화원 구로구 구로동 60-25		
18	60-58	대	94	사회복지법인 평화원 구로구 구로동 60-25		
19	57-222	장	251	백광산업(주) 구로구 고척동 산 55-1 (상기 이해관계인 전부 동일)		
20	57-228	장	587	백광산업(주) 구로구 고척동 산 55-1 (상기 이해관계인 전부 동일)		
21	57-227	대	55	사회복지법인 평화원 구로구 고척동 60-25		
	계		1,898			

물 건 조 서

(변경후)

물건 번호	소재 지번	물건의 종 류	구조 및 규격	수량	소 유 자		비 고
					성 명	주 소	
1	고척동 57	주택 (사택)	시멘기와/블록	108 ㎡	백광산업(주)	구로구 고척동 산 55-1	

물건 번호	소재 지번	물건의 종 류	구조 및 규격	수량	소 유 자		비고
					성 명	주 소	
1	고척동 57	주택 (사택)	시멘기와/블록	108㎡	(근저당권, 지상권 중구 남대 분로2가 111-1(영등포지점) (주) 한국상업은행) (근저당권 중로구 공평동 1 (영등포지점) (주) 한미은행) 배광산업(주) 구로구 고척동 산55-1 (근저당권 중구 태평로2가 120(영등포지점) (주) 신한은 행) (근저당권 영등포구 여의도동 15-22 (주) 장기신용은행) (근저당권 중구 소공동 1 한 국산업리스(주)) (근저당권 부산 중구 범일동 825-3(영등포지점) (주) 동남 은행) (근저당권 강남구 대치동 891-6 산업회화렌탈(주)) (근저당권 중구 을지로1가 101 1(서울대입구지점) (주) 하나은행) (근저당권 영등포구 여의도동 34-8 대신증권(주))		

●구로구고시제1996-88호

도시계획시설(구로리공원)조성계획결정
지적승인

1. 서울특별시고시 제1996-316호(96. 11. 23)로 조성계획결정된 도시계획시설(구로리공원)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3조, 동법시행령 제6조 및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지적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구로구청 공원녹지과

(860-2395-7)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
입니다.

1996. 12. 26

구로구청장

가. 도시계획시설(구로리공원) 조성계획
결정 지적승인 : 별항

나. 도시계획시설(구로리공원) 조성계획
결정 지적승인 도면 : 생략(서울특별
시 공원녹지과와 구로구청 공원녹지과에
비치한 도면과 같습니다.)

●동작구고시제1996-51호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고시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제1항 규정에 의거 주택건설 사업계획변경을 승인하고 동법 제33조제11항 및 동법시행령 제32조의5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1996. 12. 26

동 작 구 청 장

1. 사업명 :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2. 사업주체
 - 가. 성명 : 현대건설 상도동 직장주택조합의 3개 조합 조합장 김경인
 - 나. 주소 : 서울시 중로구 계동 140-2
3. 사업위치, 면적 및 규모
 - 가. 사업위치 : 동작구 상도동 산 51-2의 7필지

나. 사업 면적 및 규모

주택종별	대지면적 (m ²)	건축면적 (m ²)	건축연면적 (m ²)	사업비 (천원)	규모			비고
					동수	층수	세대수	
공동주택 (아파트)	변경전 : 7,239.9 변경후 : 7,822.9	변경전 : 1,917.00 변경후 : 1,918.00	변경전 : 25,497.612 변경후 : 25,491.052	26,670,934	2	6~15	194	

4. 사업시행기간 : 1994.9~1997.10
5. 관계법률에 의거 의제 처리되는 사항
 - 가. 도시계획법 제4조 및 제5조제2항에 의한 허가, 동법 제12조에 의한 도시계획의 결정, 동법 제2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 나.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39조에 의한 허가
 - 다. 도로법 제34조에 의한 도로공사시행의 허가 및 동법 제40조에 의한 도로점용의 허가
 - 라. 도·소매업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시장의 개설허가
 - 마. 택지개발촉진법 제6조에 의한 행위허가
 - 바. 건축법 제8조에 의한 허가, 동법 제15조에 의한 가설건축물의 신고
 - 사. 산림법 제62조 및 동법 제90조에

의한 허가

- 아. 수도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진용상수도 설치의 허가
6. 사업승인도면 : 생략

●강남구고시제1996-66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하천점용허가를 처리하였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

1996. 12. 26

강 남 구 청 장

허가구분	점용위치	점용면적 (㎡)	점용기간	점용료(원)	수허가자	
					주소	성명
97-계-1	강남구 일원동 4-1 분당선	250㎡	97. 1. 1 ~ 97. 6. 30	2,435,600	강남구 청담동 49-5	신안종합건설 박순석

●송파구고시제1996-292호

하천점용허가고시

하천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를 처리하였기 같

은 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

1996. 12. 26

송 파 구 청 장

허가연월일	위치	점용면적	점용기간	수허가자	
				주소	성명
1996. 12.	가락동 729 (제방)	129㎡	96. 12. . ~ 98. 1. 31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2가 5	한국전력공사 서울 전력구건설처

구 공 고

●동작구공고제1996-242호

도시계획(안)공람공고

우리 구에서 도시계획법 제11조에 의거 입안하고자 하는 도시계획(안)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 규정에 의거 주민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람공고합니다.

1996. 12. 26

동 작 구 청 장

1. 공람기간 : 1996. 12. 16 ~ 1996. 12. 30 (14일간)
2. 공람장소 : 동작구청 도시정비과 (820-1385-7)

3. 관련도서 : 생략(공람장소 비치)

4. 기타 : 도시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내에 의견서를 동작구청 도시정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도시계획(안) 조서

가. 도시계획(용도지역, 상세계획구역) 변경결정

구역명	위치	상세계획구역변경내역 및 면적 (㎡)			용도지역 변경내역 면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 정	변 경	변경후	
상세계획구역	노량진동 46, 72, 27 일대	84,000	증) 2,000	86,000	일반상업지역 (74,000) 일반주거지역 (1,500)	일반상업지역 (증: 1,500)	일반상업지역 (75,500)	노량진지구중심 (노량진동 27 일대 상세계획구역 및 용도지역변경 추가결정)

나. 도시계획(상세계획구역) 결정

구역명	위 치	면 적(㎡)	비 고
상세계획구역	동작구 상도동 363 일대	117,000	상도지구 (상도동 363-103 주변 추가 (1,000㎡)결정)

◎관악구공고제1996-275호

도시계획(안)공람공고

1. 우리 구 도시계획시설(도로, 주차장, 학교) 결정(변경)과 도시계획용도지구(학교시설보호지구) 변경결정을 위하여 도시계획법 제11조 규정에 의거 입안하고자 하는 도시계획(안)에 대하여 같은 법 제1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 2규정에 의거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 관련 도서를 공람합니다.

2. 본 도시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서를 공람장소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996. 12. 26

관 악 구 청 장

가. 공람기간 : 1996. 12. 14 ~ 1996. 12. 28(14일간)

나. 공람장소 : 관악구 도시관리국 도시관리과 (880-3385~7)

다. 공람개요 (도시계획안)

1)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결정(안)

구분	규 모				기능	기점	종점	사용 형태	비 고
	등급	유별	폭(m)	연장(m)					
기정	소로	1	10~15	220	-	봉천동 301	봉천동 288-3	-	봉천동 738-17~738-18간 L=30m 구간
변경	소로	1	10~40	220	국지 도로	봉천동 296	봉천동 288-3	일반 도로	(낙성대유지입구) 도로 폭원 조정

2)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안)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m ²)	비 고		
신설	주차장	노외주차장 (지상주차장)	신림동 412-84	172			
3) 도시계획시설(학교) 및 도시계획용도지구(학교시설보호지구) 변경결정(안) 가) 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결정(안)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m ²)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학교	미림여자 고등학교	신림동 1557-1 일대	29,501.7	-	29,501.8	면적 증감없이 신림동 1557-1와 동 305-26간 동 일면적(A=35m ²)으로 토지 상호 교환으로 인한 학교 경계 조정
나) 도시계획용도지구(학교시설보호지구) 변경결정(안)							
구분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 치	면적(m ²)	비 고		
기정	시설보호지구	학교시설	신림동, 봉천동 일 대(서울대주변)	3,760,400	미림여자고등학교 경계 조정으로 인한 용도지 구경계 조정		
변경	시설보호지구	학교시설	신림동, 봉천동 일 대(서울대주변)	3,760,400			
라. 관련도서 : 도면생략(공람장소 비치 도면과 같음)				1996. 12. 26 서 초 구 청 장			
<p>●서초구공고제1996-367호</p> <p>전문건설업양도인가</p> <p>건설업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전문건설업의 양도를 인가하 였기 동법시행령 제19조 규정에 의하여. 이 를 공고합니다.</p>							

인가 일자	양도업종 및 면허번호	양도자			양수자		
		상호	소재지	대표자	상호	소재지	대표자
96. 12.	토공92-서울-02-219	(주) 양상토건	서초동 1598-3	윤상순	강호철강 (주)	강동구 성내동 552-4	박희중

●강남구공고제1996-338호

전문건설업양도인가

건설업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전문건설업의 양도를 인가하였기에 동법시행령 제19조제6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합니다.

1996. 12. 26
강남구청장

인가 일자	양도업종 및 면허번호	양도자			양수자		
		상호	소재지	대표자	상호	소재지	대표자
96. 12. 13	토공사업 94-서울-02-226 철근콘크리트공사업 94-서울-10-320	지성건설	강남구 역삼동 747-19	최정모	지성건설 (주)	강남구 역삼동 747-19	최정모

사업소고시

●한강관리사업소고시제1996-116호

하천의점용허가

하천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하천의 점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제25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1996. 12. 26
한강관리사업소장

허가 연월일	위치	지목	점용 면적 (m ²)	점용목적	점용기간	승인받은자	
						주소	성명
1996. 12. 12	서울특별시 마포구 망원동 463 선 (한강)	하천	27.7	가스배관 안전점검	96. 12. 16~ 96. 12. 25 (10일간)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 1093-31	한국가스공사 서울지사장 김영복

●한강관리사업소고시제1996-117호
 하천점용허가기간연장허가
 하천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기간 연장허가하고

같은 법 제25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1996. 12. 26
 한강관리사업소장

허가 연월일	위치	지목	점용 면적 (㎡)	점용목적	점용 기간	승인받은자	
						주소	성명
1996. 12. 1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85-1선(한강)	하천	319.68	지하철5호선 전선을 위한 감독실 및 창고	97.1.1~97.4.30	서울시 중구 남창동 9-1	삼부토건(주) 조남현

사업소공고

●공원녹지관리사업소공고
 제1996-10호

도시공원시설(매점)관리위탁
 도시공원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관리위탁하였기 같은 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1996. 12. 26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가) 관리위탁내용

공원명	위치	시설의 명칭	면적 (㎡)		위탁관리	수탁자	
			건물	토지		주소	성명
독립공원	서대문구 현저동 101	1호매점	35.2	56	97.1.1~97.12.31	성북구 정릉동 670-14	김한곤
독립공원	서대문구 현저동 101	2호매점	35.2	56	97.1.1~97.12.31	서대문구 현저동 1-192	김순자
독립공원	서대문구 현저동 101	3호매점	35.2	56	97.1.1~97.12.31	성북구 종암동 79-40	나은미

인 사 발 령

6급 기술직공무원 면직

발령 제702호 (1996. 12. 12)

지하철건설본부 지방토목주사 정진권 원
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서울 특별 시장

기능직공무원 면직

발령 제703호 (1996. 12. 14)

서울지방경찰청 지방위생원(사역) 10등
급 문경래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서울지방경찰청 지방사무원(타자) 10등
급 정연심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서울 특별 시장

기업행정직8급 공무원 복직

발령 제704호 (1996. 12. 14)

상수도사업본부(서부수도사업소) 지방기
업행정서기 문병계 복직을 명함

서울 특별 시장

기업행정직9급 공무원 신규임용

발령 제705호 (1996. 12. 16)

신규 은정호 지방기업행정서기보시보에
임함, 상수도사업본부 근무를 명함

서울 특별 시장

'96 하반기 정년퇴직

발령 제706호 (1996. 12. 31)

내무국 지방이사관 류동주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96.12.31자로 정
년퇴직

내무국 지방서기관 한영석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96.12.31자로 정
년퇴직

상수도사업본부(중부수도사업소) 지방서

기관 양창모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 규정
에 의하여 96.12.31자로 정년퇴직

상수도사업본부(동부수도사업소) 지방서
기관 송종권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 규정
에 의하여 96.12.31자로 정년퇴직

상수도사업본부(은평수도사업소) 지방서
기관 최종호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 규정
에 의하여 96.12.31자로 정년퇴직

상수도사업본부(노량진정수사업소) 지방
공업서기관 최명준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96.12.31자로 정년퇴직

상수도사업본부 지방시설서기관 전기택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96.12.31자로 정년퇴직

건설안전관리본부(동부건설사업소) 지방
시설서기관 임명순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96.12.31자로 정년퇴직

시의회사무처 지방별정4급상당 정문호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96.12.31자로 정년퇴직

총무과 지방별정5급상당 권영하 지방공
무원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96.12.31
자로 정년퇴직

시립대학교 지방행정사무원 김홍만 지방
공무원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96.12.31자로 정년퇴직

중랑하수처리사업소 지방행정사무원 고
홍국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
여 96.12.31자로 정년퇴직

상수도사업본부(강서수도사업소) 지방기
업행정사무원 박기춘 지방공무원법 제66조
의 규정에 의하여 96.12.31자로 정년퇴직

시정개발담당관 지방행정주사 안용기 지
방공무원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96.12.31자로 정년퇴직

재개발과 지방행정주사 이재오 지방공무
원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96.12.31자
로 정년퇴직

진축지도과 지방행정주사 김치중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96. 12. 31자로 정년퇴직

공무원교육원 지방행정주사 박용창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96. 12. 31자로 정년퇴직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지방행정주사 김태호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96. 12. 31자로 정년퇴직

증량하수처리사업소 지방행정주사 유하식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96. 12. 31자로 정년퇴직

상수도사업본부(은평수도사업소) 지방기업행정주사 최경락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96. 12. 31자로 정년퇴직

상수도사업본부(영등포수도사업소) 지방기업행정주사 이수철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96. 12. 31자로 정년퇴직

상수도사업본부(강서수도사업소) 지방별정 8급상당 김덕준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96. 12. 31자로 정년퇴직

농촌지도소 농촌지도사 오세하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96. 12. 31자로 정년퇴직

상수도사업본부(중부수도사업소) 지방기계원 9등급 한기석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96. 12. 31자로 정년퇴직

상수도사업본부(중부수도사업소) 지방조무원(수도) 9등급 고종호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96. 12. 31자로 정년퇴직

상수도사업본부(중부수도사업소) 지방조무원(수도) 9등급 김계권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96. 12. 31자로 정년퇴직

상수도사업본부(중부수도사업소) 지방기계원 9등급 김대근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96. 12. 31자로 정년퇴직

상수도사업본부(동부수도사업소) 지방조무원(수도) 8등급 이명수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96. 12. 31자로 정년퇴직

상수도사업본부(성북수도사업소) 지방조무원(수도) 9등급 조정식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96. 12. 31자로 정년퇴직

상수도사업본부(성북수도사업소) 지방조무원(수도) 9등급 양갑영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96. 12. 31자로 정년퇴직

상수도사업본부(북부수도사업소) 지방기계원 9등급 박임수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96. 12. 31자로 정년퇴직

상수도사업본부(은평수도사업소) 지방조무원(수도) 9등급 최구섭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96. 12. 31자로 정년퇴직

상수도사업본부(강서수도사업소) 지방조무원(수도) 9등급 지성용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96. 12. 31자로 정년퇴직

상수도사업본부(영등포수도사업소) 지방기계원 9등급 김용희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96. 12. 31자로 정년퇴직

상수도사업본부(영등포수도사업소) 지방기계원 9등급 오선익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96. 12. 31자로 정년퇴직

상수도사업본부(영등포수도사업소) 지방조무원(수도) 9등급 김봉석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96. 12. 31자로 정년퇴직

상수도사업본부(남부수도사업소) 지방기계원 9등급 정규백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96. 12. 31자로 정년퇴직

상수도사업본부(남부수도사업소) 지방조무원(수도) 9등급 최성현 지방공무원법 제

66조의 규정에 의하여 96. 12. 31자로 정년 퇴직

상수도사업본부(강남수도사업소) 지방기계원 9등급 이광호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96. 12. 31자로 정년퇴직

상수도사업본부(강동수도사업소) 지방운전원 9등급 윤광섭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96. 12. 31자로 정년퇴직

상수도사업본부(강동수도사업소) 지방조무원 (수도) 9등급 이호연 지방공무원법 제 66조의 규정에 의하여 96. 12. 31자로 정년 퇴직

상수도사업본부(광안정수사업소) 지방기계원 9등급 조상진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96. 12. 31자로 정년퇴직

상수도사업본부(광안정수사업소) 지방조무원 (수도) 9등급 이태범 지방공무원법 제 66조의 규정에 의하여 96. 12. 31자로 정년 퇴직

상수도사업본부(구의정수사업소) 지방조무원 (수도) 9등급 고윤식 지방공무원법 제 66조의 규정에 의하여 96. 12. 31자로 정년 퇴직

상수도사업본부(구의정수사업소) 지방조무원 (수도) 9등급 김정희 지방공무원법 제 66조의 규정에 의하여 96. 12. 31자로 정년 퇴직

상수도사업본부(죽도정수사업소) 지방조무원 (수도) 9등급 윤명성 지방공무원법 제 66조의 규정에 의하여 96. 12. 31자로 정년 퇴직

상수도사업본부(죽도정수사업소) 지방조무원 (수도) 9등급 이명재 지방공무원법 제 66조의 규정에 의하여 96. 12. 31자로 정년 퇴직

상수도사업본부(노량진정수사업소) 지방조무원 (수도) 9등급 성한철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96. 12. 31자로 정

년퇴직

상수도사업본부(노량진정수사업소) 지방조무원 (수도) 9등급 배영운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96. 12. 31자로 정년퇴직

상수도사업본부(영등포정수사업소) 지방기계장 6등급 황준하 지방공무원법 제 66조의 규정에 의하여 96. 12. 31자로 정년퇴직

상수도사업본부(영등포정수사업소) 지방조무원 (수도) 9등급 유진서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96. 12. 31자로 정년퇴직

건설안전관리본부(서부건설사업소) 지방기계장 7등급 유재덕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96. 12. 31자로 정년퇴직

건설안전관리본부(남부건설사업소) 지방기계장 7등급 김진선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96. 12. 31자로 정년퇴직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지방방호원 9등급 이영복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96. 12. 31자로 정년퇴직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지방방호원 9등급 최영규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96. 12. 31자로 정년퇴직

아동병원 지방위생원 9등급 이근의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96. 12. 31자로 정년퇴직

서대문병원 지방위생원 9등급 광명수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96. 12. 31자로 정년퇴직

정신병원 지방위생원 9등급 김형연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96. 12. 31자로 정년퇴직

부녀보호소 지방방호원 9등급 윤기섭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96. 12. 31자로 정년퇴직

남부근로청소년회관 지방방호원 9등급 백윤기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

여 96. 12. 31자로 정년퇴직

청소년직업전문학교 지방방호원9등급 이광섭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 96. 12. 31자로 정년퇴직

공원녹지관리사업소 지방농림원9등급 홍성분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96. 12. 31자로 정년퇴직

공원녹지관리사업소 지방농림원9등급 김남주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96. 12. 31자로 정년퇴직

공원녹지관리사업소 지방조무원9등급 장순협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96. 12. 31자로 정년퇴직

공원녹지관리사업소 지방방호원9등급 남춘석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96. 12. 31자로 정년퇴직

중랑하수처리사업소 지방위생원9등급 김노미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96. 12. 31자로 정년퇴직

중랑하수처리사업소 지방기계장6등급 김기운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96. 12. 31자로 정년퇴직

중랑하수처리사업소 지방기계장7등급 현종국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96. 12. 31자로 정년퇴직

중랑하수처리사업소 지방기계원9등급 서영석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96. 12. 31자로 정년퇴직

탄천하수처리사업소 지방기계장6등급 석태석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96. 12. 31자로 정년퇴직

서울지방경찰청 지방기계원9등급 최창환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96. 12. 31자로 정년퇴직

서울지방경찰청 지방기계원9등급 최창환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96. 12. 31자로 정년퇴직

서울지방경찰청 지방통신장6등급 권영관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96. 12. 31자로 정년퇴직

기능직공무원면직

발령 제707호 (1996. 12. 17)

세종문화회관 지방조무원(검수표)9등급 송현숙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서울특별시 장

96년 4/4분기 명예퇴직자 특별승진 및 면직

발령 제707호 (1996. 12. 31)

내무국 지방시설부이사관 박계병 지방공무원법 제39조의3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시설이사관에 임함,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서울대공원 지방서기관 이구열 지방공무원법 제39조의3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부이사관에 임함,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내무국 지방행정주사 한우석 지방공무원법 제39조의3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행정사무관에 임함,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지적과 지방행정주사 조병원 지방공무원법 제39조의3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행정사무관에 임함,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상수도사업본부 지방기업행정주사 신종수 지방공무원법 제39조의3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기업행정사무관에 임함,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난지하수처리사업소 지방화공주사 김재문 지방공무원법 제39조의3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화공사무관에 임함,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시의회사무처 지방기계장(6등급) 이영기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 규정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상수도사업본부 지방조무원 (9등급) 김병인 지방공무원법 제39조의3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조무원 (8등급)에 임함.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상수도사업본부 지방조무원 (9등급) 이상호 지방공무원법 제39조의3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조무원 (8등급)에 임함.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서울특별시장

정부인사 발령 통지

발령 제708호

서울특별시 환경관리실 폐기물시설과 지방행정사무관 남창국(南昌國) 행정사무관에 임함 법제처 법제조정실 행정관리담당관실 근무를 명함

1996. 12. 12 대 통 령

서울특별시 건설안전관리본부 건설국 건축부 지방건축사무관 유인재(兪仁載) 건축사무관에 임함 감사원사무처 제4국(기술국) 제1화 근무를 명함

1996. 12. 12 대 통 령

6급이하 기술직공무원 전입 및 전출

발령 제710호 (1996. 12. 20)

강동구 지방임업주사 현인식 서울특별시 전입 공원녹지관리사업소

강북구 지방건축주사 임남순 서울특별시 전입 문화재과

강북구 지방약무주사보 유명순 서울특별시 전입 의약과

서대문구 지방약무주사 조공민 서울특별 전입 의약과

문화재과 지방건축주사 임경호 강북구 전 출

도시경관과 지방건축주사 최종인 마포구

전출

건설안전관리본부 지방토목주사 강병학 도봉구 전출

지하철건설본부 지방토목주사보 이종원 강북구전출

건설안전관리본부 지방토목서기 오상록 서대문구 전출

지하철건설본부 지방토목서기 이훈택 송파구전출

서울특별시장

3급 지방공무원 2급 승진

발령 제711호 (1996. 12. 18)

청소기획관 지방부이사관 신금주 지방이사관에 임함

서울특별시장

8급 기술직공무원 복직

발령 제712호 (1996. 12. 20)

상수도사업본부 지방수도토목서기 송혁진 복직을 명함

서울특별시장

가능직공무원 면직

발령 제713호 (1996. 12. 18)

상수도사업본부 지방조무원(검침)9등급 박장모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서울특별시장

행정5급 공무원 전출

발령 제715호 (1996. 12. 12)

폐기물시설과 시설운영계장 지방행정사무관 남창국 총무처 전출을 명함

서울특별시장

행정6급 공무원 직무대리

발령 제716호 (1996. 12. 18)

폐기물관리과 지방행정주사 강대일 폐기

<p>물시설과시설운영제장직무대리 서울특별시</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width: 150px; height: 30px; margin: 20px auto; text-align: center;">기 타</div>	<p style="text-align: center;">정정개재</p> <p>시보 제2005호(96.11.5일자)에 게재된 예규 제626호 기술용역에대한기술및가격동 시업찰운영기준 내용 중 오류사항을 다음 과 같이 정정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1996. 12. 26 서울특별시</p>
--	--

오	정	비고
제5조제1항제1호 입찰참가신청서(사 용인감신고서, 위임장포함)(별지1호 서식)	제5조제1항제1호 입찰참가신청서(사 용인감신고서, 위임장포함)(삭제)	시보 93-11쪽
제7조제2항 시행규칙 제13조 별표 5	제7조제2항 및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시보 93-11쪽